

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인지행동상담전문가 경과조치 자격기준

| | 인지행동상담전문가 | 인지행동상담전문가-슈퍼바이저 |
|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경과 조치 자격 기준 | <p>1. 실시기간 <u>2023년 1월 1일 ~ 2023년 12월 31일</u></p> <p>2. 자격기준 경과조치에 따른 인지행동상담전문가는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다음의 1항, 2항, 3항, 4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.</p> <p>1항.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취득 후 인지행동치료 기반 임상경력 3년 이상인 자</p> <p>2항.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가 주관 또는 사전 인증한 인지행동치료 교육 (워크숍 포함)을 15시간 이상 이수한 자</p> <p>3항.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</p> <p>4항. 심사를 통과한 자 중에서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연수교육 6시간을 이수한 자</p> | <p>1. 실시기간 <u>2023년 1월 1일 ~ 2023년 12월 31일</u></p> <p>2. 자격기준 경과조치에 따른 인지행동상담전문가슈퍼바이저는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다음의 1항, 2항, 3항, 4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.</p> <p>1항. 아래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이면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인지행동치료 기반 임상경력 5년 이상인 자 (2)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소지자로 해외 공공기관에서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경력 10년 이상인 자 (3)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이면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에서 2학기 이상 인지행동치료 관련 교과목을 강의한 자 <p>2항. 인지행동치료 관련 활동에 참여한 자로 다음 중 1개 이상을 충족시키는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KCI 등재 학술지에 인지행동치료 주제 논문을 게재한 자(1저자, 고신저자 또는 연구자 수가 3인 이하 논문) (2) 본 학회 또는 인지행동치료관련학회 학술대회에서 학술발표(구연, 포스터) 또는 사례발표를 하거나 워크숍을 진행한 자 (3)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가 주관 또는 사전 인증한 인지행동치료 교육 15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인지행동치료 교육시간 20시간 이상을 참여한 자(교육시간은 최근 3년 이내 교육만 인정함) (4) 인지행동치료에 대한 저서 혹은 역서의 대표 저자(총저자 수 3인 이내 인정. 출판물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사) |

| | | |
|----------|--|--|
| | | <p>3항.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</p> <p>4항. 심사를 통과한 자 중에서 인지행동상담 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인지 행동상담전문가 슈퍼바이저 자격연수교육 6시간을 이수한 자</p> |
| 세부 기준 | | <p>◎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경력에 대한 기준</p> <p>(1)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서 인지행동치료기반 치료를 수행한 경우를 말하며,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 후 심사한다.</p> <p>(2) 인지행동치료 기반 임상경력 증빙 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재직 및 경력증명서 ② 인지행동치료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③ 인지행동치료기반의 치료 및 프로그램 수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<p>◎ 인지행동치료 관련 교과목에 대한 강의 경험에 대한 기준</p> <p>(1) 2학기 이상, 대학 및 대학원 교과목 내용의 7주 이상이 인지행동치료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,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 후 심사한다.</p> <p>(2) 인지행동치료 관련 교과목에 대한 강의 증빙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대학 학사 시스템에서 출력한 강의계획서 ② 기관장(학과장 포함) 확인서 ③ 기타 인지행동치료 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